

[붙임3]

## 단위과제별 이행실적

(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: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)

최종작성일		소관부처		이행상황
과제명	공무원에 준하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징계시스템 구축	기관명·부서명		기한 미도래/ 이행 중/ 이행완료
조치시한	2014. 9. 30.	담당자		
		연락처·메일		

과제내용	추진실적	비고(향후계획 등)
가. 부패행위자에 대한 자의적인 징계 차단장치 강구	○ 해당기관 아님	
나.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명문화	○ 해당기관 아님	
다. 단기로 규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징계시효 연장	○ 해당기관 아님	
라. 징계위원회 구성시 과반수 이상 외부 인사 참여 의무화	○ 해당기관 아님	
마.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	○ 해당기관 아님	
바.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	○ 해당기관 아님	

최종작성일	2014. 10. 13.
과 제 명	형사고발 기준 강화
조치시한	2014. 9. 30.

소관부처	방송통신위원회
기관명·부서명	운영지원과
담당자	조주연
연락처·메일	02-2110-1347 ahs0318@kcc.go.kr

이행상황
이행완료

과제내용	추진실적	비고(향후계획 등)
가. 부패행위자 고발기준 제정	o 금품·향응수수 등 중대한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과 함께 고발할 수 있도록 「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」 제정(2014.9.24.)	
나. 금품 관련 부패행위 고발기준 강화	o 직무와 관련된 금품·향응수수, 공금 횡령·유용 등 최소한 200만원 이상의 금품 관련 부패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 ※ 「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」 제3조(고발대상)제2항제1호	
다. 의무적 형사고발 대상 확대	o 고발대상자에 소속기관의 공직자 외에 재직 중 부패와 관련된 퇴직공직자,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민간인의 범죄행위 등으로 확대 ※ 「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」 제3조(고발대상)제1항  o 인·허가, 승인, 근무평정, 계약 등 금품 향응과 관련되지 않은 중대한 부패행위도 의무적 고발대상에 포함 ※ 「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」 제3조(고발대상)제2항제5호	
라. 고발유예 규정 삭제	o 부패행위자 고발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고발유예 규정은 없음	

최종작성일	2014. 10. 13.
과 제 명	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장치 강화
조치시한	2014. 9. 30.

소관부처	방송통신위원회
기관명·부서명	운영지원과
담당자	조주연
연락처·메일	02-2110-1347 ahs0318@kcc.go.kr

이행상황
이행 중

과제내용	추진실적	비고(향후계획 등)
가. 기관간 협업을 통한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	o 해당기관 아님	
나. 부패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재정적 불이익 부여장치 마련	o 부패행위자에 대한 성과금, 수당 감액 등 재정적 불이익 부여장치를 마련할 계획임	o '14.12월 중 반영 예정

최종작성일	2014. 10. 13.
과 제 명	부패공직자 제재 현황 공개시스템 구축
조치시한	2014. 9. 30.

소관부처	방송통신위원회
기관명·부서명	운영지원과
담당자	조주연
연락처·메일	02-2110-1347 ahs0318@kcc.go.kr

이행상황
이행완료

과제내용	추진실적	비고(향후계획 등)
가.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	<p>○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자료 코너에 부패행위자 발생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‘부패행위자 정보공개’ 창구를 마련(2014.9.26.)</p> <p>※ 방통위 홈페이지 메인화면 → 정보공개 → 정보공개자료(부패행위자 정보공개) 코너 운영</p>	